

<b>의안 번호</b>	<b>2449</b>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margin: 0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6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복지교육국장 백영애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변경 및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,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 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
  - 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
- ‘고독사’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 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‘고독사’ 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위험자 범위 확대
- ‘1인 가구’ 를 ‘사회적 고립가구’ 로 용어 변경(안 제1조 ~ 제5조, 제7조)
  -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‘1인 가구’ 에서 ‘사회적 고립가구’ 로 확대
- 활동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  -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 사업 참여자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

## 다. 근거법규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3조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7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순정)

-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고독사’ 정의의 대상 범위가 ‘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’에서 ‘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’으로 개정됨에 따라
- 조례 제명 및 관련 조항 중 ‘1인 가구’를 ‘사회적 고립가구’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,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근거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13조(고독사 위험자 지원 대책)**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**제27조(민간의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·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,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
2.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
3.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